

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납부고지서

납부번호		
상호		
사업자등록번호		
대표자		
주소		
분담금 부과명세	분담금 부과 금액(원)	
	납부기한	
수납기관의 납부계좌		

「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48조의16제1항,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8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의11에 따라 위와 같이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을 부과하오니 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 직인

유의사항

- 위 분담금 부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 분담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.
- 위 분담금을 납부기한 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추가로 부과됩니다.